

국유재산 사용허가(대부계약)부

[illegible]

주: 1.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, 지목, 면적을 적고,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.

2.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,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은 (가), 같은 호 나목은 (나), 같은 호 다목은 (다), 같은 호 라목은 (라)로 기재), 등록번호를 적고, 종목란은 빈칸으로 둡니다.

3. 비고란에는 사용(대부)료의 납입상황,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.